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1. 10. 20.(수) 10:00

제23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 
(도시안전국 소관)



**복 지 건 설 위 원 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44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10. 7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0. 8.

## 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」에 의거 추진되었던 디자인 심의 및 사업 등에 대해 상위법인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우리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제정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나.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
- 다.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(안 제6조)
- 라. 위원회 설치 및 구성·운영(안 제8조~제17조)
- 마. 공공디자인 심의(안 제18조~제19조)
- 바.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등(안 제20조~제24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안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함.

### 나. 조례안 체계

본 조례안은 총 24개의 조문과 6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, 조례의 총칙(4개 조문),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3개 조문), 제3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(10개 조문), 제4장 공공디자인 심의(2개 조문), 제5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(5개 조문)으로 규정하고 있음.

#### <조례안 주요 내용>

연번	제목	주요내용
제1장	총칙	-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 등
제2장	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	-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·시행 -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- 구민 참여
제3장	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	-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·기능 -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- 위원회 위원 제척·기피·회피, 해촉 등 - 위원장 직무, 위원회 운영 - 소위원회의 구성
제4장	공공디자인 심의	-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및 절차
제5장	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	- 전담부서의 설치 - 시범·공모사업 추진 및 전문가 참여 -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
부칙	다른 조례의 폐지, 경과조치	

#### 다. 조례안 검토

- 안 제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2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, 가이드라인 마련 및 주민 참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  - 안 제5조 <금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>은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”에 따른 것이며,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3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, 기능, 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함.
- 안 제4장은 공공디자인 심의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5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으로 진담부서 설치, 시범·공모사업 추진,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규정함.
-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포함해 기존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」의 폐지 및 기본계획·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를 개정함.

#### 라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위임사항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우리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
- 금천구에서 운용하는 도시디자인, 범죄예방디자인, 유니버설디자인을 모두 포괄하여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디자인 분야 기본 및 상위 조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,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19. 1. 24.] [법률 제16047호, 2018. 12. 24. 일부개정]

**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)**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별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·변경한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,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,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